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5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557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8가단55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피고, 피항소인1. B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변론 종결2021. 11. 11.

판결 선고2021. 11. 25.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8가단553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260 전 2,711m²에 관하여, 1)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6. 12.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16. 12. 9. 접수 제64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정

판사조미연

판사이은상